

성폭력을,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을 다시 생각해보다

이가리

반성폭력운동은 대학 내 여성 운동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해 명확한 의제를 설정하지 못하고, 어떤 점에서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칙 제정 운동 이후 지금까지의 활동을 볼 적에 그러하다. 97년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학칙 제정 운동은 이후 많은 대학에서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이후 제대로된 학칙 '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운동을 벌여나가게 되지만)하게되는 99년까지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 속에서 주축을 이루는 활동이었다.

그 이후 학칙을 안정화하고, 대학 문화 전반에 걸친 가부장성과 성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성폭력을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문화적인 것임을 알려내고, 그것을 대학 문화 안에서 풀어내려는 각 단체의 활동이 있었으며, 실제로 학칙이든 내규든 혹은 비대위를 통해서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처리되었다. 즉, 2000년 이후 반성폭력 운동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이 반성폭력을 대학 내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하는 것과 실제 사건 해결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학 내 상황에도 (운동의 성과로 혹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운단위의 상황도 많이 변했다.

하지만 97-99년 학칙 제정 운동 이후 반성폭력 운동을 어떻게 전개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것, 학칙 제정 당시와는 많이 달라진 상황과 조건 하에서 어떤 식으로 반성폭력 운동의 의제를 설정해야 할지 특히 2000년 이후 반성폭력 운동을 해오고 있는 활동가들과 단원들에서 그러한 논의를 깊이 있게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사건과 많이 부딪히면서 성폭력 사건 해결의 중요한 원칙이라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리고 달라진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맥락화 해야할 지 놓치게 되는 것들이 많다는 고민도 많았다. 또한, 학칙 제정 운동이나 이전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활동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이전에 합의했던 원칙이나 개념들이 오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첫 번째 term에서는 99년 이후 많이 달라진 대학 내 정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야 할 반성폭력 운동의 의제와 전략들, 그리고 몇 가지 다시 심세하게 짚어봐야 할 개념들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이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성폭력이라고 정의하는 것의 현재적 의미를 살펴보고 장의의 성폭력과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으로 개념을 세분화하여 보는 것의 의미 등을 다시 짚어본다. 반성폭력 담론이 확산되면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 중심주의가 오용되고 있는 상황, 맥락없이 '성폭력'에 대한 선언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을 다시 한번 짚고, 또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의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금 심세하게 짚어보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보면 좋겠다. 개념상의 문제들은 입장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각각의 글에서 제안된 것들을 바탕으로 토론회 자리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우리의 입장이 정리되었으면 한다.

또한, 성폭력이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이 성폭력이 개인 대 개인이 아닌 문화적인 것임을 강조하려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사건 해결 과정에 있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나 피해자와 사건의 진화에 관한 논의들도 해보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 외에도 가해자 설명 공개 여부나 성폭력 상담실과 총학생회의 관계, 여운단위에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는 수위

나 방식 등 같이 논의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들 뿐 아니라 평소의 고민을 많이 내 놓고, 같이 논의하고, 입장을 새롭게 만들어보는 자리가 계기로 이번 작업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내용들이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을 새롭게 고민하는 데 하나의 제안이 되기를 바라며, 학칙 제정 운동 이후 어떤 면에서 정체되어 있었던 반성폭력 운동의 적절한 의제 설정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토론 회에서 많은 의견과 논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글으로 이 글을 마친다.

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성주의자들에게 근대적인 권리와 인권에 대한 주장이 여전히 큰 의미와 효과를 가지는 현실에서¹⁾, 법적인 영역에 적극적인 평등한 권리의 기준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올슨(Olsen, 1984)은 자유주의 법체계 내의 '권리'를 주장하는 담론에서 섹슈얼리티의 핵심 문제는, 여성이 사회가 여성들의 성적 표현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도덕적 규제로 인해 억압받는 동시에 사회가 성적 자유의 이름으로 남성들에게 허용하는 성적 공격과 폭력에 의해 억압받는다는 사실에 있다고 지적한다. 권리에 관한 이론적 틀 속에서는 가치들의 근본적인 충돌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권리에 기반한 이론은 법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기반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담론의 구조 속에서 결국 자유와 보호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하는 의사 결정자에게는 딜레마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Olsen, 1984:388-9). 올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체계 내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갖는 유용성에 주목하면서, 권리를 기술(description)로서 권리, 주장으로서 권리, 그리고 분석적 도구로서 권리로 나누어 설명한다. 우선 '기술(description)'로서 여성이 권리를 가진다는 개념은 여성에게 공정한 사회적 실현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여성들이 X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주장은 (만약 X할 권리가 부인된 여성이 법원에 성공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면) 여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 등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주장'으로서 여성이 권리를 가진다는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불평등한 특성과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특성에 대한 주장이다. 즉 "여성들이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은 인류가 타자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윤리적인 주장인 것이다. 이는 여성의 자기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며, 여성의 도덕적 가치와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주장은 긍정적인 정서적 만족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올슨은, 기술로서 그리고 주장으로서 권리개념과 달리, 이러한 권리개념이 분석적인 도구로서 사용될 때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답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행동의 자유에 관한 여성들의 권리는 보호에 관한 권리와 서로 갈등하며, 실질적 평등에 대한 그들의 권리는 형식적 평등과 충돌한다(Olsen, 1984:391-2).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가 자유와 보호의 선긋기 논쟁으로 환원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따라서 올슨(1984:392)은 페미니스트들이 구체적인 정치적 성과들을 얻기 위해 활동하며, 이를 위해서 권리주장을 분석적 도구가 아니라 권고로서 그리고 기술로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자유와 보호 사이에 선을 긋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방식의 논리구조 자체에서 벗어나 섹슈얼리티의 내용과 의미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 섹슈얼리티는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은 남성과 같지 않으며 또한 남성과 같은 방식으로 공권력에 의한 자율권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는 권리와 섹슈얼리티 자체가 남성의 가치와 관련, 그리고 경험만이 사회의 정상적인 가치와 관련,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는 체계를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여성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는 사건과 생물학적인 남성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는 사건을 동일한 문제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은 단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가져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하는 자율성, 프라이버시권 등은 페미니즘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쟁되어 온 개념이다. 법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증거는 앞에서 언급한 페미니스트 연구들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법률적,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실현과 갈등을 통해 구성되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강간죄의 보호법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때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혹자는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평등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면, 강간죄의 객체를 남녀 모두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외국

1) 실제 자유주의적 법학자들이 선언하는 것처럼 법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구체적인 현실에서 법은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남성의 경험과 가치만이 통용되는 고장적이고 보편적이며 본질적으로 균질한 영역이 아니다. 페이트만은 근대적 사회계약에 숨어있는 '성적 계약'이 여성(Woman)을 배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Woman)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 존재하는 여성들(women)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Pateman, 2001:37). 이러한 법에 대한 관점을 전제로, 현실에서 남성의 시각과 언어로 드러나는 법의 영역에 개입할 수 있다.

2) 올슨(Olsen, 1984:391)은 "권리주장"의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권리"라는 단어에서 감정적인 가치를 제거하는 것은 어려운 동시에 무익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의 강간법에서도 '평등한 법의 적용'을 위해 강간법에서의 보호대상을 여성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으로 개정해왔다. 이러한 비판과 변화는 역사적으로 강간죄가 다른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와 달리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가 여성의 '출산능력'과 연관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강간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고 가해자는 남성이며, 사회적인 권력/섹슈얼리티 구조 속에서 강제적 성행위에 관한 경험은 성별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으로 침해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남녀를 불문한 보편적 권리로 상정한다면 이는 구체적인 여성의 경험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여기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인 여성법주를 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별화되어 있는 권리와 섹슈얼리티의 사회적인 구조와 맥락 속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베리안트(Berlant, 1990)는, 성적 침해에 관한 고통을 보편화하여 설명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경험을 배제할 뿐 여성들이 견뎌야 할 진정한 고통의 조건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여성들이 욕망하고 가치를 무도록 때워온 권리와 섹슈얼리티의 사회적인 구조와 맥락 속에서 인식된다. 만약 그러한 구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여성' 법주를 가정한다면 이미 성별화된 사회에서 구성된 규범적인 여성상을 재생산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강간으로 침해되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은, 그동안의 추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 개념의 확장과 재개념화'를 통해서만 얻어지기 어렵다. 보편화된 권리로 추상화된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의 경험을 통한 구체적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성폭력을 둘러싼 언어 - '법의 언어'의 한계

성적 자기결정권의 두 번째 딜레마는 법의 언어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무한정 확장으로 비롯된다. "성폭력" 개념의 확장"은 반성폭력 운동을 하는 여성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의제였으며, 반성폭력 운동은 대부분 법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성폭력 관련법 재개정 운동에서부터 대학내 학칙 및 자치규약개정운동 등). 여기서 성폭력의 개념은 항상 '상대방 동의없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법적인 용어로 설명된다.

그러나 여성들이 겪는 성폭력의 경험을 폭력으로 설명하며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성폭력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다른 차원의 일이다. 폭력을 입증해야 하는 법의 언어 속에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상적인 문화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적인 문제들을 모두 법적인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미 큰 재하는 침묵의 틀에 맞춰 개별적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재구성하게 된다. 과도한 법적 언어는 소소한 일상사에서 벌어지는 성의 문제들을 동일한 '성폭력'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을 항상 법의 언어로 설명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주장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법의 언어로 채우는 것은, 그 내용을 구체적인 개인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만들어나가거나 '~하지 않을 권리' 식의 부정과 삭제들 통한 금지의 언어에 한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성의 성적 자율성은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말하기'를 통해 채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말하기는 법의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모든 성폭력의 기준이지만, 그 때의 성폭력은 법의 영역에서의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권리의 차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성폭력의 문제를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다.

성질'과 '있다'와 일어나고 일어난 구별할 수 없는 일련의 계속적인 요소나 사건'을 지시하는 묘사적인 용어이다. 켈리는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강압, 무력의 공통적 기반을 강조한다. 즉 다양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별 외적 사회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 놓여있고 여성에 대한 범죄적 폭력에서 일상적인 '남성적' 태도 사이에 공통된 기반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두 번째 의미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학대와 강압, 무력의 범위가 일련의 연속적인 경험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어떠한 경험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서 성희롱으로, 어디에서부터 성추행, 성폭행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폭력 연속선 개념은 여성들의 일상적인 성적 폭력의 경험과 강간의 위험, 경미한 성희롱에서 섹스에 대한 압력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여성 경험의 특수성과 여성의 주관적 공포와 정서적 피해를 문제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연속선의 개념은 경험의 경계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음을 허용한다. 사건 당시이나 이후 스스로의 경험을 강간으로 규정하지 않는 여성들이 느끼는 학대당했다는 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지지하고 시간이 지나 어떠한 사건에 대한 규정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준다.

그러나 켈리의 성폭력 연속선 개념을 반성폭력 운동의 이론적 틀로 흡수하면서 연속선 개념보다는 성폭력 개념의 확장이 강조되었다. '여성이 경험하는 모든 폭력에 연속선이 있다'는 것과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은 성폭력이다'라는 주장은 같은 것이 아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정도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여성의 경험 속에서 성폭력과 똑같은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인식은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명명되지 않는 여성의 공포와 피해 등을 개념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섹스에 대한 압력, 강요에 의한 성관계 등이 여성에게 강간과 유사한 폭력으로 경험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유효한 시각을 제공해 준다. 성폭력 연속선 개념은 데이트 성폭력과 같이 '모호한 동의', '상대방이 원해서', '섹스를 강요하는 다양한 문화적 심리적 압력'에 의한 성관계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을 명명할 수 있게 한다. 한 개인의 물리적, 신체적 힘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와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다양한 층위의 압력 하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성관계 모두가 연속적이고 성폭력 친화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이상에 성경험과 강간 사이의 여성의 경험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것이 가해 행위가 동일한 차원의 성폭력이라는 주장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성폭력 연속선 개념과 정의의 성폭력 개념은 여성주의적 인식론과 사회문화적 비판의 담론으로서 매우 급진적인 실천적 의미를 갖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법적, 규제적 담론에서 적용되기에는 조심스러운 점이 많다.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을 잘 표현하기에는 조금 가벼운 어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 괴롭힘을 법제화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성희롱이 개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 이에 반해 확장된 성폭력 개념은 문제의식으로서 합의에 비해 실제 제도와 규정에서 사용할 때 개념적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확장된 성폭력과 성희롱 개념 둘 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포괄적인 성적 폭력,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반성폭력 학칙에서 성폭력만 명시하던 것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함께 명시하면서 형법상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성폭력으로 형법상의 범죄 성립의 유무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성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등). 연세대학교의 경우 확장된 성폭력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따로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확장된 성폭력 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성희롱이란 용어를 기피하는 명분이 되어야 할까닭은 없다. '성적 괴롭힘'을 규제하고자 하여 성희롱을 법제화한 취지와 그러한 법제화를 이루어내기까지의 지난한 노력, 그리고 기왕에 존재하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적, 문화적 실천의 능동적 가능성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성희롱은 단순히 지나가는 말에서부터 포유이나 육체적 접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단순한 성적 욕구에 기초한 행위가 아니라 권력의 불평등과 관련한 행위라는 점을 가시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성희롱의 예방과 처리의 책임을 단계에 부차함으로써 성적 자율권의 침해를 처벌함과 동시에 노동, 교육 등에서와 평등권을 보장하고자하는 적극적인 권리 보호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성차별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의의 성폭력 개념보다는 성희롱 개념이 유용하다. 연세대와 서강대의 경우 성차별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서울대와 고려대는 성희롱의 하부 항목으로 전자에서는 성차에 기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후자에서는 특정 성별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규정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성희롱의 유형에서 환경형 성희롱은 성차(gender)에 기반한 괴롭힘, 상고정관념에 따른 여성 비하적 언어 사용 등을 규제하는 개념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연세대 여성주의 자료집들에서는 성차별을 성폭력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서 성차별은 성차에 기반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일 수는 있지만 개념적으로 성폭력(sexual violence)과는 구분된다. 개념은 그야말로 개념으로서의 명증성과 다른 개념과의 변별성이 있어야 한다. 성폭력의 개념을 이렇듯 확장시키는 것은 운동적 관점에서도 긍정적 것만은 아니다. 성희롱이 적극적인 권리 보호에의 요구를 포함하는 반면 성폭력 담론은 성에 기반한 폭력을 가시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폭력을 과장하고 피해자를 지나치게 '피해자화'할 위험이 있다. 또한 모든 성범죄 즉,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스토킹, 언어적 성희롱 등을 모두 성폭력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의 가해 행위의 구체성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넓게 사용되는 성폭력 가해자라는 지칭 속에서 가해 행위는 추상화되고 성범죄자, 성폭력 가해자라는 기호에 가려 행위의 구체적인 범죄성이 비가시화되는 효과를 낳는다. 성희롱은 성적 자율권의 침해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드러냄으로써 폭력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성적 자율권과 노동권,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단체 구성원의 인식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집단 내의 문화 전반에 관한 성찰을 요구하면서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괄하는 능동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의 높아짐 vs 성폭력의 탈맥락화 탈정치화

여왕

여기까지가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이제 너도나도 전문가이다. 이런 성폭력이다 아니냐의 판단도 매우 '잘' 한다. 판단의 근거도 '정확'하다. '성적자기결정권'이나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잔뜩 늘어놓으며 이야기 한다. '반성폭력 자료집'에 실린 내용 그대로 '알기'도 잘 한다.

이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성폭력'이라 명명한다. 성교육 행사 중 한 쪽지에 있던 '콘돔실습'을 보면서 대낮에 야외에서 남성실기 모형으로 콘돔실습 하는 것을 보니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이 피해자이고 이는 '성폭력'이라고 주장한다. 총아학생회는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

한 여성주의 자치단체에서 새터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성교육 영상물'을 보고도 매우 불쾌하였으니 '성폭력'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심지어 새터 내규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고 외친다. 반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하는 자리에서 한 학생은 무거운 짐을 남자에게들고만 끌고다니는 것도 성폭력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한 모든 행위들을 성폭력/성폭력 아님으로 나누려하고, 확인받고 싶어 한다. 자신이 예전에 '여자친구'에게 했던 행동이 성폭력이나 아니냐를 끊임없이 상담해 오는 사람들도 여성주의자들은 피곤해진다.

아직까지도 '강간'만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온갖 '올바른' 개념들로 무장하여 끊임없이 성폭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성폭력의 피해에 대한 오해는 '강간'만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질적으로 다를까. 혹은 무엇이 더 위험할까.

이는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반성폭력 운동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최근 몇 년간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누구나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체 이게 왜 성폭력이야'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 해왔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반성폭력의 담론을 확산하기 위한 당연한 방법 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새터 내규 자료집이나 반성폭력 교양에 있어서 '강간'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폭력의 경우보다는 매우 일상적인 문화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강간'만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해보던 것에 문제제기가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상적인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보다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졌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떠한 행동이 왜 성폭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나 설명 없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칠고 당위적인 문구는 성폭력에 대한 조악한 이해를 낳은 것이다. 콘돔 실습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람, 그리고 성교육 영상물을 보고도 '성적 불쾌감'을 느낀 사람. 이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성적 수치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성폭력이라고 명명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말을 해주지 못했다. 어떻게 그런 사소한 것이 성폭력이 될 수 있는지는 물론 혹은 저항들에 대답하기에 만 배뻘더면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이 성폭력임을 끊임없이 주장하다가, 너가 지금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낯설기도 하거니와 끊임없는 자아분열과 집열을 경험하게 된다.

작년 선거기간에는 총학생회 모 선거운동본부의 포스터가 문제가 되었다.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선거제시판에 한 사람이 그 포스터가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그 포스터를 성폭력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정후보와 부후보가 중지로 눈을 밑으로 내려며 메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성적인 욕설의 함의가 담긴 중지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많은 고민들을 던져주었다.

이 포스터를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관되게 사과를 요구하며,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이니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총학생회 정족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 하자는 제안의 끝에 대해서, '가해자와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행위로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고 반박하였다.

'선거기간'이라는 예민한 시기에 불거진 이 문제는 적절히 대처하기 곤란한 문제였다. 그리고 꽤나 심각하게 전개된 문제였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개념이 얼마나 왜곡되고 오염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였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별권력관계에 기반한 폭력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피해를 받아왔던 '여성'의 시각으로 성폭력을 바라본다는 것을 뜻한다.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의 언어로 성폭력을 바라보고, 성폭력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동시에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가해자 중심으로 성폭력이 규정되고 이야기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함한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 중심주의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다른 어떠한 여지도 없이 무조건 '성폭력'이 된다는 것으로 왜곡되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상적인 성폭력'을 강조하여 이야기함으로써 '남들이 성폭력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남들이 피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을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다 더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고, 보다 더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또한 드러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남성일반'이 성폭력을 자신의 무기로 가져가 버리거나 성폭력이 탈정치화되고 탈맥락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으로부터 여성주의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관성적으로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너무 쉽게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위의 논의와는 또 다르게 '일상적인 성폭력'과 '성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과정 속에서 '모두가 성폭력이라고 인정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단정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위 거칠게 말하여 수위가 높은 성폭력에 대해서 잘 이야기 하지 않음으로 해서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성폭력을 비일상적이고 특수한 성폭력으로 위치 짓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는지도 고민이 든다.

<피해자/가해자와의 관계맺기>

눈남

이제까지 연세대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도 총학생회에 신고되었을 때, 특히 그 사건이 학생과 학생 간의 사건이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단위의 대표자와 총학생회 대표자, 총학생회 대표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꾸려져 사건을 처리하곤 하였다. 교수가 개입된 사건은 여운단위원의 힘만으로 시도조차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은 좋은 학칙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학교측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지만, 학생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많은 경우 우선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다.⁴⁾

비대위는 최대 6명에서 최소 3명 정도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3명에서 6명이라는 인원은 말 그대로 원칙 일 뿐이어서, 비대위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은 대부분 총학생회의 소속 구성원에게 집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타 대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의 진술서를 받고 가해자 진술서를 받고 비대위를 소집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비교적 '큰' 일부터 자결구태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공문 발송,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연락하기, 비대위 구성원들끼리의 논의 일정 잡기, 사건 처리 과정 공개를 위한 여러 작업을 등등이 여운단위의 구성원에게 맡겨지곤 한다. 안그래도 '할일 많고 사람없는' 여운단위에 모든 일들이 떠맡겨지면서 소수의 여운단위 활동가들이 시간적·심리적으론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자치화더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1. '해결주제'로서의 활동가 위치짓기

우선 활동가들이 자신을 어떻게 위치지을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위치지어야 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보통 활동가들은 '사건 해결 주제'의 위치에 놓임으로써 '주관적이고 합리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가해자가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만나는 것이 필수적이고-물론 당연히 따로따로 만난다-그러한 과정에서 활동가의 위상 혹은 위치에 균열이 생겨난다.

• 피해자의 '피해자화'

보통 활동가들은 가해자를 만나기 전에 피해자를 만나, 그의 피해 경험을 정확하게 들은 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의견을 교환하여 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지나친 피해자의 '피해자화'가 일어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상-수동적이고 자신이 입은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큰 피로움을 느끼며 어쩔 바를 모르고 피로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 각각 차이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일관된 태도로 대함으로써 서로 다른 피해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활동

3)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다'는 말만 하더라도, 이 말 자체에 너무나 큰 어중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매우 쓰기 꺼려지는 말이다. 절대화된 일상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란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무언가 '특별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4) 학칙에 의거한 사건 처리보다는 자체적인 사건 처리를 선호, 혹은 주로 사용했던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유보하기로 하더라도, 활동의 방향을 위와 같이 잡음으로써 사건 처리 과정의 '거의 모든' 역할을 여운 단위가 맡아 오게 되었으며, 그것으로 큰 부담으로 많은 활동가들에게 작용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들은 피해자가 그것을 피로움에 대하여 100% 이해하진 못할지언정, 이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활동가들이 피해자가 그것을 피로움에 대해 '지나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나머지, 그들의 피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할 점이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피해자는 '피해자'이므로 그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차적으로 받을 수 있을 뿐, 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가해자에 의한 활동가의 '피해자화'

게다가 많은 경우, 가해자를 만난 후 해결 주제들이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화되기도 한다. 특히 가해자와의 면담시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 등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안그래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에 가득 차 있던 활동가들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가해자가 활동가들에게 폭력적인 언사를 일삼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에 활동가들은 피해자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해결 주제가 가해자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될 때, 그는 결코 '해결 주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활동가들이 스스로를 피해자와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여 더 큰 피로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 피해자에게 '신뢰' 주기

그러나 사건이 그런대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해-특히 이런 마음은 해결 주제가 자신을 피해자와 동일시하는 과정을 겪고 난 이후 더 커질 수 있다-많은 활동가들이 사건에 대담하게 되는데, 이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피해자가 무엇을 요구하는가'이다.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피해자의 요구를 가능한한 모두 들어주고 싶어하지만, 상황은 그다지 녹록치 않게 흘러가는 것이 보통이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혹은 너무 미약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대응해내지 못한다. 물론 그것이 덜 적절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야 할 것 같은 생각에 고민하는 것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이런 요구는 너무 무리한 것이네요'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는 순간 자신이 이제까지 피해자에게 주었던 신뢰가 물거품이 되어 버릴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어물어물하게 되어 버린다. 그러다보니 활동가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큰 부담에 시달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까지 이행하기에는 너무 심신이 피폐해져 버린다.

• '객관적인' 해결주제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결주제로

이러한 상황을 보며, 활동가들이 요구받고 있는 '해결주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해결주제'라는 말 속에서 사건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바라보고 피해자 가해자 양방에게 최대한 공평해야 하는 등의 객관성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사건의 처리 과정은 반드시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은 결단코 일치할 수 없다.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 행위를 축소 및 왜곡하고, 심한 경우에는 가해 사실 그 자체가 있었음을 부인하기까지도 하는 상황에서 '중립적인 해결주제',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모두 받아들이거나 그 진술에서 합의점을 찾아내 사건을 중재하는 해결 주제란 존재할 수 없다. 결국 그 중립적인 해결주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자신들이 '진정으로 중립적인' 해결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가를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리라.

그렇다면 활동가들이 서는 '해결주제'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자신 혹은 피해자를 더더욱 '피해자화'함으로써 자신과 피해자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경계하고, 활동가 자신을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세력으로서의 '해결 주제'로, 피해자를 사건 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또 하나의 주제로 위치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활동가가 전면에 나서서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활동가의 역할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피해자는 그저 '감추고 가려야 하는' 존재처럼 여겨진다면 이는 피해자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킴으로써 예의 수동적 피해자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fair'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해자에게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성폭력 사건 지원에 있어서 겪게 되는 101가지 어려움

(백만 가지 어려움?)

여왕

학내 여성운동 단위들은 성폭력 사건의 직간접적인 해결 혹은 지원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은 사건에 따라 또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무수한 사건 해결 과정 속에서 '해결'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요구안이 다 '받아들여졌음' 경우 잘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요구안이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더 많은 혹은 다른 종류의 피해를 계속 해서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해결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해결이라는 말이 단지 사건 처리의 종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이 지향하는 것이 해결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건 지원에 있어서 매번 고민거리로 남게 된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여운단위들은 성폭력 사건을 '말고' 있으며,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고심의 과정 속에 커다란 한 축은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이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학내 성폭력 상담실에서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반성폭력 학칙에 의해서 성폭력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는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미땅히 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여운단위들은 '학칙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반성폭력 학칙으로는 '해결'되는 사건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만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치적인 '비상대책위원회'의 형태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는 또 별도로 '자치규약'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학칙'이 온전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자치규약은 없어져도 되는 것일지에 대한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

학칙이나 자치규약이 나가야 할 방향 이전에, 현재 각각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와 사건 해결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지를 살펴보겠다.

1. 학생 비상대책 위원회를 꾸렸을 경우

학생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많은 경우 여운단위와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서 꾸려진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매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에 반해,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자치규약'이라는 것이 성폭력을 가한 개인에 대한 책임이나 징계와 성폭력적인 문화, 성폭력이 가능한 그 공동체에 대한 문제제기 그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문화'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서 '개인'을 '징계'하기란 어떻게 하더라도 어렵다.

또한 자치규약은 학생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과반이 혼돈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 의미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 자치규약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그 공동체의 공동책임을 묻기란 더더욱 어렵다.

5) 많은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끝내내 역을 해 하면서 마저 못해 받아 물어 주신다.

그래서 가해자가 발뺌을 한다던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면 대책위원회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

또한 대책위원회를 많은 경우 다른 학생회와 함께 구성하게 된다. 이 때 실질적으로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속해 있는 단위의 학생회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못한다. '성폭력'과 관련된 일을 단위 학생회의 '사업'으로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 노동--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대책위원회 회의에 겨우겨우 나오는 정도가 된다. 그래서 가해자와 조금 더 떨어져있는 여운단위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집착을 시도하고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만나야 하고 협박해야 하고 달래야 하고 일러야 한다. 이는 아주 미치지는 일이다.

게다가 단위 학생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그다지 높지 않거나, 심지어 개념이 없을 경우에는 대책위 내부에서도 의견을 일치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대책위원이라 피해자 면담과 가해자 면담 그리고 가해자 교육과 가해자가 소속된 단위의 반성폭력 교양까지 하면서, 성폭력 사건해결의 실무적인 일처리 - 공문발송, 사건일지 작성, 어떤 경우는 여론과 작업, 자료 만들기, 자료 부치기- 까지 하려다 보니 정말 일이 많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잊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대해서는 오히려 무더어 지는 일이 생기며, '피해 사실'이 경험화된 하나의 '사례'로 다가오기까지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성폭력 사건 해결이 여성주의자에게 나아가 여성운동을 하는 단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망각하게 되는 것과 같다.

기껏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진 조직이 만들어졌지만,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실명공개사과대자보를 부착하는 것이나 가해자 교육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가해자교육은 절대 '징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것이 '징계'로 여겨지는 것은 매우 문제이다. 가해자 교육을 받겠으니, 실명공개사과를 안하면 안 되겠냐고 우기는 가해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웃긴 상황이며, 반기로 한 가해자 교육을 받지 않는 가해자를 잡아다가 교육기관으로 보내는 것도 매우 웃긴 상황이다.

또한 비대위에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실명공개사과대자보인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실명공개사과 방법에는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많은 논의가 있었거나 없었다. 이미 하나의 원칙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정말 이것이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지 못했던 것 같다. 어떤 것이나 그렇지만, 하나의 원칙이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지나 이야기 해볼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어쨌거나 '실명'공개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매우매우 지난한 일임이 분명하다. 또한 그로 인해서 다른 요구사항들이 묻히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 다른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 공개에 이름을 넣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된다는 것이다. 차라리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성폭력 담론을 확산시키는 과정으로서 사건을 공개하는 것이라면 사실 '실명공개'는 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는 '실명공개'만이 피해자가 생존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물론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대위라는 기구가 '공식성'과 함께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냥 가해자의 실명을 사건과 함께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의 '중재'를 통해서 '조화'롭게 해결했다는 인상을 주는 사과문은 비대위에 공식력을 부여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총여'학생회'라는 이름 때문에 이 '중립성'의 표표를 대놓고 벗기도 힘들다. 정말 사과문이 아니라 그냥 각서를 받아서 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 사과문이라니.. 정말 감정에 호소하는 말 같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한면만 용서해달라. 그 구절구절한 자기 정당화의 글을 이제저러 고치라고 조정하는 과정은 한 때에는 더 어렵다. 어떤 때는 가해자나 나나 그냥 내가 쓰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것이 사과문이다. 아무리에도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피해자가 원하는 '진심어린' 사과를 어찌 할 수 있겠냐 말이다. 사과문을 대책위에서 부착하는 것 역시 부당해 보이는 일이다.

6) 거의 여운단위 인자라고 한다.

7) 가해자교육은 정말 가해자를 위한 교육인데, 가해자에게 그리 큰 충격을 강제로 내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렵다 교수 성폭력, 해결하자 교수 성폭력.

학

학교에서의 성폭력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집이나 직장, 길거리, 여행지, 학교 등과 같이 사람이 '있는' 공간이라면 그 장소를 불문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위협과 실제적인 가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과 학문의 공간으로 불리는 학교 또한 성폭력에 있어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런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서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폭력 가해가 교육 제도와 연관된 관계인 교사와 학생 혹은 동료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학생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 가야만 하고, 교사나 교수로부터 수업을 들어야만 하고, 동료 학생들과 함께 생활 - 공부, 놀이, 교육 관계 - 해야만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성폭력은 학생이 학생이기 위한 이러한 과정들과 결합되어 발생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이나 교육기관의 체제 등과 같은 조건들은 학교에서 성폭력 가해에 직접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사건 자체를 은폐시키기도 하고, 때론 조장하기까지 한다.

대학 그리고 교수 성폭력⁹⁾

교육자에 의한 성폭력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중등, 초등 교육기관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어쩌 보면 대학 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남한 사회에서 중등 이하의 교육 기관에서는 학생들에 의한 적극적인 해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성폭력 사건 접수, 대책위원회 구성, 사건 공개, 가해 교사 징계 요구 등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초등, 중등 교육기관에서 교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있어서 학생은 피해자요만 위치 지킬 수 있으며, 사건 해결이나 대책 촉구는 보통 학생들의 보호자인 학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청소년이나 아동기의 학생들과는 다르게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대학생은 자체적인 자치 조직 구성이나 권리 회복, 권리 요구에 대한 주체적인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생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해결 활동이나 반성폭력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기도 한다. 10년이 채 안되는 대학내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불과 2, 3년 전부터이다.¹⁰⁾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 교수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93년 서울대 신정후 교수 사건부터이지만,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교수 성폭력 문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반성폭력 자치규약이나 학칙 제정 운동에 있어서 교수 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논의의 밖에 있었다.¹¹⁾ 이는 이 당시의 활동가들이 교수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문제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학생이라는 지위에서 교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특히 신정후 교수 사건과 같이 대학원에서의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교수 성폭력의 전형성을 획득하다 보니 교수에 의한 다른 성폭력들이 '교수 성폭력'으로

9) 이 글에서 교육자에 의한 성폭력을 다룬면서도 그 범위를 대학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10) 사실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이러한 역사적인 구분은 서울 지역에서 그나마 몇몇 대학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주의 활동이나 반성폭력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몇몇 대학을 제외한다면 '반성폭력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여전히 낯선 대학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11)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이 교수, 교직원, 학생을 모두 포함하는 대학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교수 성폭력 문제를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교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 예방 교육, 가해 교수 징계 등 - 은 이 시기에 제기되지 않았다.

명명되지 못하고 있었다. 법적인 규정인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닌 교수에 의한 언어적 성폭력이나 강의실 성폭력은 최근에서야 교수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예기되고 있다.

교수 성폭력에서 '교수'가 갖는 의미 : 나쁘거나 혹은 이상하거나

교수 성폭력은 대학에서의 교수가 차지하는 지위가, 교수-학생 사이의 차별적인 권력관계가 성폭력에 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 성폭력은 대학 내 강의실이나 연구실뿐만 아니라 교수-학생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학 밖에서의 만남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학은 학문과 연구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남성중심적¹²⁾이고 성차별적¹³⁾이고 성폭력적¹⁴⁾인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실제로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학의 이러한 모습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사회와 언론의 선정적인 관심은 다른 성폭력 사건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유교 윤리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교수[스승]는 보통 성폭력 가해자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이는 교수가 지적, 도덕적 우위를 갖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수가 성폭력 가해자라고 알려졌을 때 나오는 '교수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교수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¹⁵⁾라는 전혀 상반된 반응은 모두 교수의 이러한 사회적 지위를 밑바탕에 두고 있다.

대학에서 교수는 학교나 계단에 고용된 존재이면서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위를 획득한다. 그리고 교수는 법률에 따라서 그 지위가 보장받는다.¹⁶⁾ 또한 교수들은 다른 교수들과 함께 배타적인 교수집단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수집단을 바탕으로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해서 동료 교수들은 적극적인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한다.¹⁷⁾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해 교수 용호를 하지는 않더라도 대다수의 교수들은 교수 성폭력에 대해서 침묵하고, 교수 성폭력을 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린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윤리적인 범죄로 여겨지는 성폭력 가해자가 교수라는 것에 대한 선정적인 관심이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나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교수라는 지위가 성폭력 자체를 부정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교수라는 것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것이 '인정' 받게 되기도 한다. 성폭력에 대한 가해자중심주의적 시선이 교수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비난주의'가 되어 성폭력 사건 해결에 '이상한'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학생 성폭력의 경우 사건 처리도 어렵고 학교에서의 징계는 더더욱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고립된 여성운동단체가 힘겹게 사건을 처리해나가야 하고, 학내에서는 온갖 논란에 휩싸이게 되기도 한다.¹⁸⁾ 하지만 교수 성폭력의 경우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12) 요즘 대학에서 여학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이라고 불릴 때 여전히 남학생이 기준이 되곤 한다. 특히 교수 사안은 여교수가 10%에 머물고 있으며, '여성' 학과 - 생과대, 간호대, 음악대 - 가 아닌 학과에서 여성교수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13) 대학은 결코 남성만의 공간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학은 여성이 배제되는, 여성을 배제시키는 공간이 자연스레 형성되는 곳이다.

14) 대학에서는 스승의 이름으로, 선배의 이름으로 성폭력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성폭력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은폐되었다.

15) 교수 성폭력에 있어서 성폭력은 '그런 짓'으로 지칭되면서, 교수를 성폭력의 예외적인 존재로 여기는 경향은 계속된다.

16)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교원 예우, 보수 우대, 불체로 퇴진, 신분 보장, 징계제도의, 단체 교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17) 동국대 사회학과 7교수 성폭력 사건이나 고려대 6교수 성폭력 사건에서 나타난 동료 교수들의 모습은 교수집단이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지 않 보여준다.

동국대 7교수 징계 제정의 호소문에 서명한 당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였던 김진균 교수는 자신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K교수가 실수를 했고,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수습을 하는 데도 무언가 미흡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있었다는 소문도 들었다. 사람이 실수를 했을 경우, 그것을 뒤늦게도 참회하고, 개과천신하게 하는데, 압력을 주어서 '지장'을 꼭 나가게 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K교수가 앞으로 이런 사태를 규탄하는 이상으로 그 실수를 인정하고 개과천신하리라고 믿는다."(2002.6.28, 우먼타임즈 '동국대 사건 속 알, 말, 말' 기사)

고려대 6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머릿속에 온갖 먹고 마시는 그런 생각이 가득한데 언제 공부 하나? 교육학 중에서 교육 사회학은 냉철한 비판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신 가지고 자신을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 교육을 비판하고 할 수 있느냐? 공부 할 때는 강하게 해야. IMBC 시사대담진 2580 '성폭력 교수님' 방영)

18) 학생이 가해자인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면 학내여성단체 사람들 혹은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비록 사건

교수 성폭력에 있어서 가해 교수의 역고소는 성폭력 사건 해결과 피해자 지원 과정을 어렵게 만든다. 가해 교수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고용이나 고소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학생 단체들의 경우 고소를 당하면 사건 해결 활동을 진행하는 게 어려워지게 된다.³¹⁾ 그리고 가해 교수는 학생 단체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회단체³²⁾나 교수³³⁾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기도 한다. 가해 교수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또다시 2가 가해에 노출되기도 하고, 수년동안 진행될지도 모를 소송은 학생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변호사비를 부담시키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가해자중심주의가 여전히 강한 법원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나 지원 단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³⁴⁾ 법정에서의 증거주의의 적용은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이 되는 반면,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건 공문화 과정에서 가해 교수의 설명이나 행위가 공개되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을 공개³⁵⁾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가해 교수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는 공소 사실 없음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작은 노력으로 사건 해결 과정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압박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6) 대학 내에서의 가해 교수 징계

대학에서의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는 학교와 교원 징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히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공공기관에서는 성폭력 사건 처리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대학에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같은 이름의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제정 후 수년이 지났지만 반성폭력 학칙은 학내에서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칙에 따라 만들어진 학교 성폭력 상담실의 경우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교수 대상 예방 교육의 경우에는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학내 성폭력 사건 논의와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는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경우 보직에 있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는 교수들이 위원이 되기도 하고 성폭력대책위원회 회의 자리에서는 성폭력 문제를 처리할 기본적인 자격도 갖추지 못한 위원들에 의해서 오히려 가해교수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성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교수 징계 과정은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축소하고 징계를 낮추려는 학교측과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를 가능하게 하려는 학생들의 요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학교측과 징계를 담당하는 교수들은 가해 교수를 중심에 놓기 때문에, 교수 징계에 관한 불명확한 원칙과 절차들이 가해 교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적용되곤 한다.

7) 교원 징계 제도의 문제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교수 성폭력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 가해 교수는 대부분 징계를 받으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제심의위원회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다.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징계제심의는 학생에게 성폭력 가해하여 피해를 준 교수가 징계를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된다.³⁶⁾

31) 동국대 사회학과 7교수는 피해자를 부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하였고, 서울산업대 7교수는 피해자와 학생 대표 2인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하였다.

32) 2000년에 경북대 6교수와 경일대 7교수는 성폭력 행위로 해임 징계를 받고나서, 대구여성지원회 대표를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33) 동국대 사회학과 7교수는 사회학과 학과장이었던 조은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역고소하였다.

34) 대구여성지원회는 성폭력 가해 교수들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2002년 10월 17일 1심 판결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다. [2003.9.1 오마이뉴스 '가해자 역고소 어떻게 보십니까?']

35) 성폭력 가해자는 가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혹은 부작적인 사실관계가 잘못된 공개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36) 2001-2002년까지 두해동안 3건에 불과했던 교수 성폭력 관련 제심 청구 건수는 2003년 한 해 동안 10건으로 늘어났다. 이중 6건은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4건의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